

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조례안

의안
번호

2000 - 7

제안연월일 : 2000. 4. .
제안자 : 거창군수

제정이유

-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'99. 8. 31.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(제13조의4)에 의거 『주민감사청구』 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
-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 :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주요골자

- 감사청구 주민수
- 거창군과 거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같은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함.(안 제2조)

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('99. 08. 31 신설)
- 주민감사청구제조례표준안(경남도 감사16800-10088('00. 02. 03)

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,0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